

호세기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시민 123- 1-5

80. 1. 15.

수신 수신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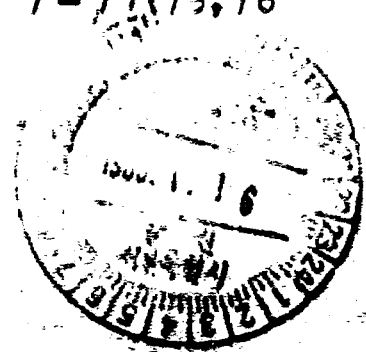
제목 공문서 수신처 기호부여 통보

1. 총무처 사관 123-40(80. 1. 11)에 관련임
 2.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220호 79. 12. 28)으로 신설된 환경청(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관리실행법(대통령령 6729 73. 6. 9)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변경으로 종전에 실시하여온 수신처 기호가 80. 1. 15부터 법침과 같이 재조정 시행되었기 시달하니 소속기관 및 직원에게 주지시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함
- 첨부 공문서 수신처 기호 입람표 1부. 끝.

기	공사1계장	공사3계장	공사2계장	공사1계장	동물계장	계장	계장	관리계장	소	행정공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관 3, 서국 8.9, 서과 1-74, 서구 1-17(13, 16 제외), 서사 1-70, 직합 1-7



문 서 처 리 인	101.17	감 세	
	102 호	상 회	
		101	101

공문서 수신처기호 일람표
=====

가. 중앙행정기관

가. 1	대통령비서실	가. 25	문교부
" 2	대통령경호실	" 26	농수산부
" 3	중앙정보부	" 27	상공부
" 4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	" 28	건설부
" 5	경제과학심의회외	" 29	보건사회부
" 6	감사원	" 30	교통부
" 7	국무총리비서실	" 31	통신부
" 8	계획조정실	" 32	문화공보부
" 9	행정조정실	" 33	조달청
" 10	행정개혁위원회	" 34	산림청
" 11	경제기획원	" 35	전매청
" 12	총무처	" 36	국세청
" 13	과학기술처	" 37	관세청
" 14	국토통일원	" 38	대검찰청
" 15	제1무입소장관실	" 39	병무청
" 16	제2 " "	" 40	농촌진흥청
" 17	법제처	" 41	수산청
" 18	원호처	" 42	공업진흥청
" 1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 43	목어청
" 20	외무부	" 44	노동청
" 21	내무부	" 45	철도청
" 22	재무부	" 46	한국항만청
" 23	법무부	" 47	조사통계국
" 24	국방부	" 48	수토국

가. 49	건물관리국	가 52	특정지역종합개발
" 50	문화재관리국	"	추진위원회
" 51	동력자원부	53	환경청

나.

(총천과 같음)

다.

(총천과 같음)

마.

(표천과 같음)

바.

마 1	한국은행	마 14	대한부업진흥공사
2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종합화학공업(주)
3	국민은행	16	대한광업진흥공사
4	중소기업은행	17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5	한국주택은행	18	대한주택공사
6	한국증권거래소	19	대한건설공사
7	한국조폐공사	20	산업기지개발공사
8	한국식유개발공사	21	한국도로공사
9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2	국제관광공사
10	농업진흥공사	23	한국해익개발공사
11	농어촌개발공사	24	근로복지공사
12	한국전력주식회사	25	한국토지개발공사
13	대한석탄공사	26	한국방송공사
		27	